

의안 번호	1737	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의안 제출

- 제 출 일 : 2021. 5. 3.(월)
-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상임위 예비심사 : 2021. 5. 13.(목)
- 예결위원회 회부 : 2021. 5. 14.(금)
- 예결위원회 심사 : 2021. 5. 17.(월)

2. 제안이유

-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에 변경된 지출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	분	2021년도(기정)	2021년도(변경)	증 감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1,000,000	3,577,000	2,577,000

- 수입계획
 -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: 1,000,000천원 → 3,577,000천원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5. 검토 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을 세입이 부족하거나 긴급 수요가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변경된 지출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합계정으로의 운용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제정) 2020.10.26 조례 제1051호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회계연도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, 일부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1. 1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부칙 <제17390호, 2020. 6. 9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, 제47조,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